

UCC와 저작권 라이선스

□ 최진원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I. 서설 : 정보 생성의 새로운 트렌드 – UCC

1. UCC와 방송사업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2006년 말, UCC 사용자들을 상징하는 'YOU'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비슷한 시기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구글에 1조6500억원에 매각되면서 UCC의 위력을 세계에 알렸다. WEB2.0으로 상징되는 정보혁명시대, 그 가운데에 UCC가 있다.¹⁾ 인터넷을 비롯한 효율성 높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공유가 매우 쉬워졌고, 정보의 생산자가 비약적으로 증대한 것이다. 이처럼 UCC는 정

보의 양적 팽창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와 고발, 정보 공유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정보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UCC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범람등에 대한 우려도 보이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저작권을 위협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은 정보 창출의 독과점적 지위에 위기를 느꼈을 뿐 아니라, UCC라는 이름을 달고 당당하게 무단 유통되는 자사의 콘텐츠들로 인해 수익성의 위협을 경험하였기에 더욱 반발하였다. 때맞춰 저작권보호센터는 UCC 중 80%가 넘게 불법 복제된 것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저작권 논쟁에 불을 붙

1) 방송사업자에게도 UCC의 등장이 저작권 침해의 원흉만은 아니다. 방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가히 'TV2.0'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참여형 방송'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를 활용할 BM개발도 진행 중이다.

였다.²⁾

2. UCC는 불법인가

UCC는 말 그대로 이용자(User)가 제작한(Created) 콘텐츠(Contents)를 의미한다. 고유의 특성이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체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통칭하는 것이다.³⁾ 최근 복제권을 침해한 UCC를 User Copied Contents라고 조롱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고⁴⁾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가 만든 것을 PCC(Proteur Created Contents)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의의 UCC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⁵⁾ 학술적이거나 사실적 표현 여부,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하거나 나아가 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라면 UCC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⁶⁾

때문에 UCC의 법적 취급은 일의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제작하였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원저작자에게는 불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유통되는 UCC의 상당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유튜브나 팬도라TV 등 의 UCC 사이트들은 연이은 저작권 분쟁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⁷⁾ OSP책임론에서 나아가 UCC자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⁸⁾ 그 이유는 UCC의 특성상 저작권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UCC는 IT기술이 구현해준 개방과 공유의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상적 모델로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더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또 다른 제3자가 새롭게 변형하면서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결과물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자인 원저작자와 실질적 개변자들에게 각각 혜택을 받아야 하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저작권의 처리는 점점 힘들어진다. 진화하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더욱 난해하다.⁹⁾

UCC 발전에 있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은 문화적 기여도를 좌우할 근본적인 사안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와 매개자, 이용자간의 균형 관계를 조정하게

2) 저작권 보호센터는 총 1,000개의 신규 UCC 콘텐츠를 조사해 분석하였는데, 이중 16.4%만이 순수 창작물이었다. 중앙일보 2007.2.10.자

3) 김윤명, “UCC의 법률 문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제38호 (2007), 162면.

4) 물론 완전히 원저작물과 동일한 dead copy된 복제물은 이용자가 ‘생성’ 한 UCC라고 할 수는 없다.

5) UCC의 분류는 다양한 방법이 행해지고 있으며 개념 정의에도 異論이 많다. 대표적으로 곽재우(2008)는 UCC를 최협의, 협의, 광의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작방식에 따라 UGC, UMC(User Modified Contents), URC (User Recreated Contents)로 분류한다. 곽재우,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UCC동영상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2호 (2008), 111-112면.

6) 이런 의미에서 해외에서는 창작이 아니라 편집과 유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UGC(User Generated Content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7) 제작 뿐만 아니라 UCC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작되었다면 DB제작자로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디지털화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불법 콘텐츠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 UCC만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으며, 합법적인 UCC 중개 사이트는 100% 도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동근, “UCC와 공공자산의 공유”, UCC의 현재와 미래, 정보법학회 세미나 (2007.6.30.), 121면.

9)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인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2006년 개정으로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었다.(제66조, 제67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동영상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개변하는 일들은 UCC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UCC의 합법적 이용을 검토하면서 저작인격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되는 바, 이하에서는 UCC제작자, UCC중개자, UCC이용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II. 방송사의 법적 대응과 간접침해

1. 방송사와 UCC 매개자간의 분쟁

UCC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동영상 UCC가 유행을 선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기에, 법적 분쟁은 방송사업자가 제기한 불법 동영상에 집중되어 왔다.

2006년 2월 NBC가 유튜브를 상대로 'Lazy Sunday'의 삭제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¹⁰⁾ 유튜브와 저작권자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져, 2007년 2월에는 바이아컴(Viacom)이 자사의 동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10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¹¹⁾ 일본의 NHK도 2006년 10월 유튜브를 상대로 동영상 3만건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전세계의 방송사들은 UCC매개자를 상대로 분쟁이 진행 중이다.¹²⁾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0월 지상파 3사는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동영상 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후 많은 협의와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갈등을 남겨 두고 있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는데, 2007년 11월에 티

비(www.tvee.co.kr)를 운영하는 제이제이미디어웍스가 판도라TV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교사 방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방송사의 UCC 분쟁 추이를 살펴보면 무단 이용한 개인은 일단 제쳐두고,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판도라TV 등의 OSP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간접 침해 이론

UCC 매개자를 법적 조치의 상대방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구제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으며 소재가 분명한 매개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권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며 편리하기 때문이다.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유통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매개자를 상대로 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바 간접침해 이론이 발전하였다.

간접침해 이론에는 미국의 판례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 바,¹³⁾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례법으로 발전한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근거로 매개자의 책임을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간접침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저작권법에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수단(means)을 제공하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은 송신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연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기기의 제공행위, 복제방지장치 무력화 기기의 제조

10) Greg Sandoval, "NBC strikes deal with YouTube", CNET NEWS.com, 2006.6.28.

11) Viacom sues Google over YouTube Video Clip", The NewYork Times, 2007.3.14.

12) "YOUTUBE Removes 30,000 Files Amid Japanese Copyright Concerns", The Wall Street Journal, 2006.10.20.

13)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사건을 시작으로 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사건,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사건, A&M Records, et al. v. Napster 사건 및 Grokster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위, 허락을 받지 않은 수신을 위한 장치의 제조 행위 등을 법전에서 언급하고 있다.¹⁴⁾ 일본은 기여 침해 간접침해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수의 판례들에서 저작물의 사용주체성을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순수 간접책임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방조책임을 묻고 있는데,¹⁵⁾ 최근 논란이 된 소리바다5 사건에서도 이러한 논리 구조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¹⁶⁾

3. OSP면책과 UCC 합법화

간접 침해 이론은 구제의 효과와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에 공감은 있지만, 민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매개자의 활동을 자칫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매개자인 OSP에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미국은 1998년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었으며 독일은 '온라인서비스법' (Teledienstgesetz: TDG)에서 OSP의 면책과 관련한 일반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본도 2002년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시행하여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을 OSP 책임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OSP의 사업상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5월 저작권법에 책임 제한에 관한 독립된 장을 신설하여 대처하고 있다.¹⁷⁾ 주의 의무를 준수한 매개자는 위법한 UCC가 유통된다 하여도 법적 책임이 제한되며,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하다.¹⁸⁾

즉 매개자에 대한 책임 추궁만으로는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며, OSP에게 무죄가 내려졌다고 해서 UCC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본래적인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III. UCC와 저작권 – 해결책의 모색

1. 저작권법적 영향: 수법자의 확대

저작권법은 인쇄술이라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709년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진 Anne 여왕법을¹⁹⁾

14) 영국 저작권법 제24조-제26조, 제298조.

15)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사건들을 통해 OSP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형사책임까지 부과한 바 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최진원, "소리바다, 형사 책임의 인정", 엔터 제148호 (2008).

16) 서울고등법원, 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

17) 간접침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승종/최진원,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흥익법학 제9권 제1호(2008), 225-231면.

18) 유튜브는 저작권 대책의 일환으로 비디오 식별 장치(YOUTUBE Video Identification)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리바다5도 필터링 등의 조치를 통해 위법을 피하려고 하였다.

19) 앤여왕법의 공식명칭은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이며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첫 출판이후 14년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白田秀彰, コピライトの史的展開, 信山社 (1998), 130-143面.

그 효시로 보고 있다.²⁰⁾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의 투자 보호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체 기술 발전에 따라 대상을 확대해 왔다. 최근까지도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는 바, 전문적인 창작자와 출판사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와 같은 거대 자본가에 국한되었고, 일반 공중은 저작권법을 모르더라도 별다른 불편이 없다시피 하였다.²¹⁾ 그러나 UCC라는 거대한 흐름은 저작권법 수법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정보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고 매개자의 도움 없이도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직접 권리처리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만인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세간의 문제 의식과는 달리 UCC라는 이유로 저작권법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고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²²⁾ 그럼에도 오늘날 UCC의 저작권 문제가 특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수법자 확대 현상의 영향이 크다.

UCC는 아마추어 이용자 계층이 기존 저작물을 변형하면서 출범시킨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인데, 이들 개개인은 교섭을 통해 라이선스를 체결할 능력이 부족하고, 권리 처리가 안된 UCC의 제작 유통은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권리자의 지위와 이용자의 지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Lisensor: 권리자의 자발적 사전 허락

콘텐츠의 공급의 증대만으로는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작권에 따라 UCC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보호요건으로서의 창작성 기준을 매우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UCC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조엘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적어놓은 글들이나 조카가 쓴 그림 일기까지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허락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며,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²³⁾ 이는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

20) 저작권법의 기원은 앤여왕법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출판사들에게 수여된 특허권을 비롯하여 출판길드에 부여된 Stationer's Copyright 등도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영국 저작권법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정오, “저작권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안 김지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률출판사 (2003), 74-104면; Harold L. Nelson and Dwight L. Teeter, Jr., *Law of Mass Communication: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5th ed., Fountain Press (1986), pp. 296-297 참조; 1517년 베니스 저작권법이 최초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문화적 쇠퇴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Frank D. Prager, “A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1545 to 1787”, 26 *Journal of the Patent Office Society* 711 (1994), pp. 723-724; 반면 北村行夫 “情報化社会著作権”, コピライト No.456 (1999), 16面은 프랑스의 1791년 공연권법을 참된 의미의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21) 저작권법 제1조.

2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유영역에 속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법적 이용이 된다. UCC 제작자 입장에서는 창작성을 비롯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복제권과 공연권을 비롯한 권리들을 부여받게 되며(동법 제16조-제22조) 저작인격권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11조-제13조) 권리의 제한이나 보호기간, 양도 이용허락에 있어서도 여타 콘텐츠와 다를 것이 없다.

23) 친고적이므로 권리자 의중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범죄는 성립한 것이고 단지 소추 요건만을 결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용자는 불안한 지위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 2005년 논란이 되었던 '애국가' 저작권 논란 참조. "애국가 저작권 국가에서 사 달라" 중앙일보, 2005.2.11.자.

거나 나아가 자신의 UCC가 널리 퍼지길 원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안으로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축소시켜 공표할 것을 유도하여 공유 영역(Public Domain)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애국가 저작권 논란을 겪은 이후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었고,²⁴⁾ 법에서 부여한 권능 중 원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미리 제시하는 'Some Right Reserved' 방식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⁵⁾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제한한다면 라이선스에 대한 부담과 UCC 불법 논란은 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영상 UCC와 같이 다수의 저작물이 혼재된 경우 CCL을 통한 허락도 복잡한 권리 양상을 필 수 있으며, 포기나 CCL 등은 권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3. Licensee: 특례 조항과 이용자권

일반인이 권리 처리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더구나 이용자는 곧 창작자인 UCC 환경에서 이용자의 지위 보장이 중요해지면서, 보호를 위한 해석론에서 나아가 이용자권을 비롯한 입법론까지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영상

UCC 업체인 '판도라 TV'가 활발한 UCC창작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인용권'을 신설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UCC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자, 비영리 목적의 5분 이내의 동영상 편집은 사용료 대납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²⁶⁾

국제저작권법의 준수라는 입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제28조의 인용 조항을 넘어 권리화를 주장하는 인용권 논란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용자가 정보생성의 주역이 되는 UCC 시대의 특성상 이용자를 위한 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했으며, 개별 이용자 대신 매개자가 라이선스 협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국지적으로나마 이용자권(User's right)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원활한 2차적 이용을 위해 저작권의 배타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을 감안할 때,²⁷⁾ 인용권의 주장은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IV. 저작권 라이선스의 문제와 대책

1. 문제의 제기

UCC가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24) 개정 저작권법(2007.6.29. 시행) 제135조 저작재산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25) <http://ccl.or.kr>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나 파란, 네이버, 싸이월드 등이 CCL의 표준 라이선스를 도입하였는 바,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6) 문화일보 2007.2.2.자.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인 판도라TV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지상파 3개 방송사에 방송영상편집을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다.

27)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07 지적재산권 추진전략에서 저작권의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용 가능한 신저작권 제도를 2년 이내에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UCC 저작권 대책, 일본서 먼저 법제화', 디지털타임즈 2007.7.10.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법적으로 제한규정을 확대하거나 이용자권까지 논의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조정해 온 권리자—매개자—이용자간의 세밀한 균형을 흔들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3단계 테스트’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현행법 하에서 UCC가 불법의 꼬리표를 떼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과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다.²⁸⁾ 하지만 저작자의 확인과 허락을 위한 거래 비용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바, 저작권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²⁹⁾ 예컨대 박진영 작곡의 ‘Tell Me’ 노래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은 고등학생이 이용허락을 위해 박진영씨와 통화를 한다거나, 여자친구를 위해 ‘사랑해도 될까요’ 피아노 연주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올리려고 작곡가 심현보씨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불법 UCC 단속이나 저작권 교육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합법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저작권 처리(copyright clearance)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2. UCC 매개자의 라이선스

UCC 활성화로 인한 수혜자인 포털 사이트들은 UCC의 저작권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사의 회원들을 대행하여 저작권자들과 협상에 나서주기도 하며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게시물의 저

작권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문제되었던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서 엠파스 등의 포털들은 회원들의 사이트내 이용에 대해서는 신문사와 계약을 통해 포괄적인 이용 허락을 받아둔 바 있으며, 음악 사이트 중에는 자신이 부른 노래를 UCC로 녹음하여 업로드하고 판매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이트도 나타나고 있다.³⁰⁾ UCC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의 사이트내 이용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아 두는 포털이 다수 있다.³¹⁾

이러한 노력은 저작권 분쟁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모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매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권리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은 간접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의도와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적 판단이 설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약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 역시 해당 사이트를 벗어나 제3자가 개입되거나 영리적인 경우에는 채권적 이용허락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³²⁾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3. 집중 관리 단체

이용허락은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권리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집중관리단체의 신탁 관리는 규모의

28) 블로그의 게시물을 사전 라이선스 체결 없이 ‘퍼가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스크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29) 과거에는 소수의 저작권자와 출판사, 음반제작자, 방송사 등의 매개자간의 계약이 대부분이었기에 연락이나 협상이 비교적 수월했다.

30) <http://ucsing.mnet.com>

31) Click-wrap License의 유효성이나 약관 규제법, 민법 제103조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UCC를 해당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이를 타 회원이 사이트 내 이용하는 것을 이용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3. 선고 2005가단283641 판결.

경제를 실현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1847년 프랑스의 SACEM을 효시로 보고 있는데, 과거부터 라이선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저작물 유통에 장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적 조치로 개별 권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리라 기대된 적도 있었지만,³³⁾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대량 이용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면서³⁴⁾ UCC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신탁관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 이전에는 겨우 3개의 단체만이 존재하였으며, 지금은 12개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험이나 전례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³⁵⁾ 최근 사용료 징수액을 비롯한 외형적 수치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독일의 GEMA나 일본 JASRAC과 비교하면 규모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체내 분배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때로는 권리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초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그 규모나 운영성과에 있어서도 대표격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조차도 신탁비율이 높지 않아,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KOMCA를 찾아도 상당수의 곡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³⁶⁾ 집중관리단체가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저작권 인증과 원스톱 권리처리를 위한 거래 시스템

일반인(User)들로서는 저작물을 팔고 싶어도 마땅한 판매처를 찾기 어렵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권리자의 탐색과 추적 비용으로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어디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인지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제 일반 대중은 타인의 저작물을 대량 소비하면서 각각 이용허락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또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의 이용을 직접 허락해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했기에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은 아직도 건설 준비 중이다. 저작권 라이선스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사가 되었지만, 라이선스 과정은 여전히 소수의 전문가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개선되어도 UCC는 불법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

필부도 쉽게 조작하여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DB구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전자

33) P. Bernt Hugenholtz, "Adapting Copyright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Future of Copyright In a Digital Environ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86.

34)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2007), 5-7면.

35) 박영길,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 및 향후 과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4차 포럼, 문화관광부, 2007.6.27, 36면 이하.

36) 안계성/조소연,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53면. 30만여곡(추정)의 국내 음악저작물 중 7만6천여곡 만이 관리대상이었다.

적 중개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작물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대상을 탐색하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여 필요한 만큼의 저작물을 이용한 후, 이에 대한 징수 및 분배를 일괄 서비스하기 위한 중앙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원하는 저작물을 선택하면 처리해야 하는 저작권의 대상을 알려주고 저작권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재의 권리자를 인증해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처리할 권리 대상을 파악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듯 간편하게 협의하고 결제, 정산되는 ‘원스탑 쇼핑몰’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위원회는 2006년에 저작권인증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민간업체인 CCLC는³⁷⁾ UCC 제작자를 위한 라이선스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라이선스의 거래비용을 낮추려는 태동은 느껴지고 있다. 등록 제도의 개편이나 전산화, 정산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다.

V. 결어 : UCC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일반적으로 하나의 콘텐츠에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첨부되며 처리해야 할 저작권도 다양하다.³⁸⁾ 저작권은 전전유통이 가능하며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권리자 공시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권리자를 추적해야 한다는 업무는 또 하나의 골치거리이다. 어렵게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특성상 허락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다. 법경제학적으로도 탐색과 협상,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불법은 극복되기 어렵다.

UCC의 합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저작권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거래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법정 허락의 확대, ECL제도, 이용자권의 도입 등이 논의되었고, 대량 생산 소비시대의 대안으로 집중 관리 단체나 CCL 운동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어느 한가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³⁹⁾

저작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권리가 복잡하게 얹혀있기 때문에 정부와 이익단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협력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처리를 마치고 저작물을 창작하여 다시 타인에게 쉽게 허락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UCC로 인한 문화 발전을 순조롭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37) <http://www.cclc.or.kr>

38) 예컨대 동영상 UCC라 텍스트, 사진,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이 한꺼번에 사용되며, 권리자 역시 다수가 된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유통의 편의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기도 하다.(저작권법 제99조~제101조)

39)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배타적 지배권의 인정이 그 필요조건은 아니다.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제”, *지적재산권* 제25호(2008), 27면.

필자 소개



최진원

- 2000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8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 2004년 ~ 2006년 : 최달용 국제특허법률 수석연구원
- 2006년 ~ 2007년 : 디지털법연구소 책임연구원
- 2007년 ~ 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외래교수
 홍익대학교 강사
- 주관심분야 : 뉴미디어와 IT법,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적 보호, 제호의 보호, 광고에 대한 법학적 연구